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문구정비 및 지원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국·시비+구비)			(국·시비+구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급	150만원 (100+50)	100만원	심한 장애 (1~3급)	150만원 (100+50)	
2급	150만원 (100+50)	100만원			
3급	100만원	100만원			
4급	100만원	70만원 (70)	심하지 않은 장애 (4~6급)	100만원	100만원 (100)
5급	100만원	-			
6급	100만원	-			

※ 1~6급인 여성장애인, 1~3급인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 100만원 지원(국·시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3396-5374, FAX:3396-8734, 메일:joju0316@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를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다른 장애인 관련 유사 사업에 따라 출산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한 장애 : 150만원
2. 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

제4조제2항 중 “제1항”을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주민센터 동장”을 “동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애인가</u> <u>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u> <u>로써</u>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시 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 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 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 <u>장애인가</u> <u>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u> <u>써</u> ----- ----- ----- ----- ----- ----- -----.
제4조(지원액) ①서울특별시 중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만, <u>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u> <u>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5</u> <u>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u> <u>며,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u> <u>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u> <u>차액을 지급한다.</u>	제4조(지원액) ①----- ----- ----- ----- ----- -----. -- <u>다른 장애인 관련 유사 사업</u> <u>에 따라 출산지원금</u> ----- ----- ----- ----- -----.
1. <u>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u> <u>우</u> <u>가. 장애등급 1~2급 : 150만원</u> <u>나. 장애등급 3~4급 : 100만원</u> <u>다. 장애등급 5~6급 : 70만원</u>	1. <u>심한 장애 : 150만원</u>

현행	개정안
2. <u>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u> 가. 장애등급 1~2급 : 100만원 나. 장애등급 3~4급 : 70만원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더라도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지원절차) ①<u>각 주민센터</u>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2. <u>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u> ②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절차) ①<u>동장</u>-----.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